붙임 7 특수가연물의 저장·취급기준 ※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(「화재예방법 시행령」 별표3)

○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하며, 실내외 쌓는부분의 바닥면적간 이격거리 준수

- (실 내)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1.2m 또는 쌓는 높이의 1/2 중 큰 값 이상
- (실 외)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

※(높이.면적) ┌ **(별도설비 없는 경우) 쌓는높이 10m 이하, 쌓는부분 바닥면적 50㎡ 이하**
└ **(살수설비 or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)** 쌓는높이 15m 이하, 쌓는부분 바닥면적 200㎡ 이하

<실내·외 저장·취급 기준>

구분	저장·취급 기준	예 외
실외	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,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	쌓는 높이보다 0.9미터 이상 높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
실내	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,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	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

◇ **실외 저장·취급 적용기준**

-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,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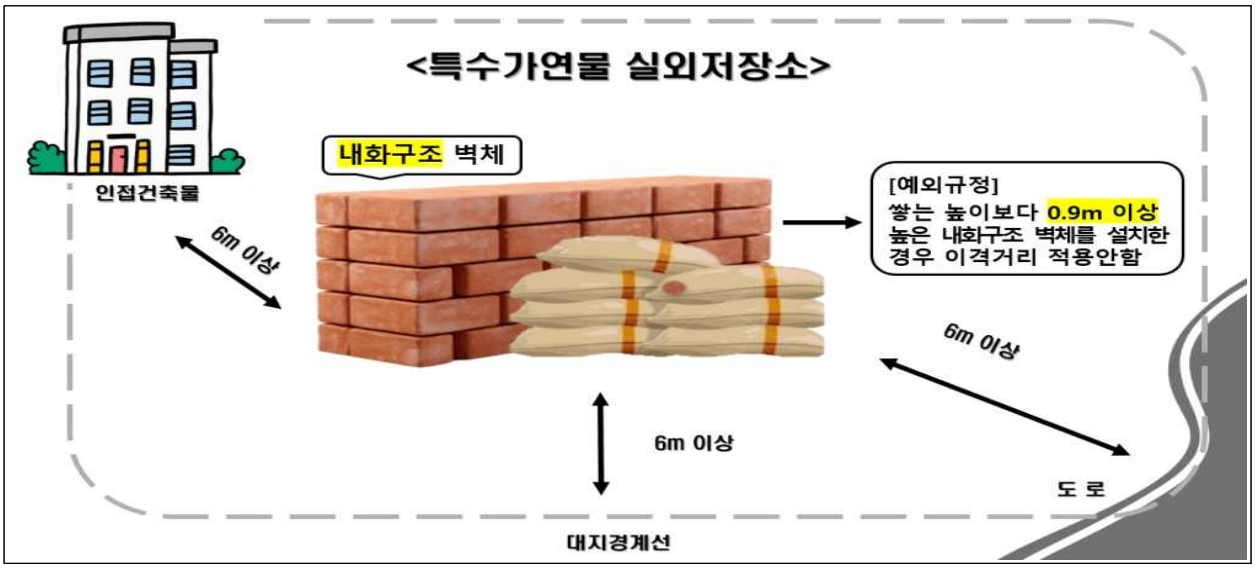

* "도로"의 경우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에 따른 도로를 의미

붙임 8 특수가연물의 소방시설 및 설비 기준

□ 소방시설 설치 기준(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 별표4)

○ **(대 상)**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른 **공장 및 창고시설**로서 **일정량**(500~1,000배)* **이상**의 **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**하는 경우

* 배수: 최대 저장량 ÷ 수량(시행령 별표2)

○ **(시 설)** 자동화재탐지설비, 옥내·외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

<특수가연물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>

구 분	특수가연물	설치장소
자동화재탐지설비	500배 이상	공장·창고
옥내·외소화전설비	750배 이상	
스프링클러설비	1,000배 이상(500배*)	

*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

□ 설비(완화) 기준(「화재예방법 시행령」 별표3)

○ 특수가연물의 저장·취급 시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,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, 저장·취급 기준을 완화

※ 석탄·목탄류를 발전용(發電用)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

<설비별 저장·취급 기준>

구분	**살수설비**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**대형수동식소화기**를 설치하는 경우	그 밖의 경우
높이	15미터 이하	10미터 이하
쌓는 부분의 바닥면적	200㎡ 이하 (석탄·목탄류의 경우에는 300㎡ 이하)	50㎡ 이하 (석탄·목탄류의 경우에는 200㎡ 이하)

※ 관련근거: 「화재예방법 시행령」 별표3(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)

붙임 9 특수가연물의 표지 기준

□ 특수가연물의 표지

○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, 크기, 색상 및 위치 등에 관한 기준에 충족하도록 특수가연물 표지 설치

- 기존('22.12.1.이전) : 화재예방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표지 설치
- 신규('22.12.1.이후) :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시 표지 설치

<특수가연물 표지설치 기준>

구 분	표지기준	
표시사항	- 품명, 최대저장수량,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, 관리책임자 성명·직책,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	
크 기	- 0.3m × 0.6m 이상 직사각형	
색 상	일반부분	- 바탕 : 흰색, 문자 : 검은색
	화기엄금	- 바탕 : 붉은색, 문자 : 백색
위 치	- 특수가연물 저장·취급 장소 중 보기 쉬운 곳	

특수가연물	
화기엄금	
품 명	합성수지류
최대저장수량 (배수)	000톤(00배)
단위부피당 질량 (단위체적당 질량)	000kg/㎥
관리책임자 (직 책)	홍길동 팀장
연락처	02-000-0000